

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

군포시의회 성복임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4월 8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: 첨부 조례안 참고

2.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

가. 제출기한 : 2020년 4월 13일 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FAX

다. 제출내용

1) 조례안에 대한 의견 (붙임 서식 참조)

2)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 (참조 : 의회사무과)

1) 주 소 :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

2) 전화번호 : 031-390-8715, FAX 031-392-4004

3) 전자우편 : allnew@korea.kr

붙임 1. 의견서 서식 1부.

2.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1부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

(성북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0. 4. 3.

발 의 자 : 성북임, 이견행, 장경민,
홍경호, 이길호, 이희재,
신금자, 김귀근, 이우천

1. 제안이유

-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생활 전반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, 이로 인해 지역 경제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
- 각종 사회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,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모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긴급 지원대책이 요구됨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 ~ 제2조)
-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- 지급의 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
3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」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」

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군포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
2. “재난기본소득”(이하 “기본소득”이라 한다)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가, 경기도, 군포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,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협력하여 군포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.
3. “지역화폐”란 「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.

제3조(지급대상) ① 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시장의 의무) ① 군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재원은 시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한다.

제6조(기본소득의 지급)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기본소득의 지급액과 지급기준,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「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 제9조에 따라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.

③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, 유가증권 및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지급의 중지 및 환수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소득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기본소득을 환수할 수 있다.

1.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
2.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없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
3.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
4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본소득이 지

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사항